

# 기업 반부패 가이드

2016. 12.



국민권익위원회

# 순 서

## I. 기업 반부패 활동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 필요성 ..... 1
- 2. 기대효과 ..... 6

## II. 추진전략 ..... 7

## III.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 1. 계획 수립 ..... 8
  - 가. 마스터플랜 마련 ..... 8
  - 나. 추진 조직 ..... 9
- 2. 규범 마련 ..... 10
- 3. 실행 ..... 11
  - 가. 부패신고제도 ..... 11
  - 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 12
  - 다. 공익신고제도 ..... 17
  - 라. 내부감사제도 ..... 19
  - 마. 상벌제도 ..... 20
  - 바.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 21
- 4. 협력 ..... 24
- 5. 평가와 개선 ..... 27

## 1. 필요성

### 가. 국내·외 환경 변화

#### 1) 국내 환경 변화

우리나라는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에 이롭다면 어느 정도의 부패는 용인할 수 있다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성장만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가 아니라는 인식이 서서히 생겨났고, 정부나 국민들의 외부적 요구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률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양벌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제공을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 포함)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sup>1)</sup>에는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법과 관련하여 자발적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에 따라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종업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한다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또는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1)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9624 판결)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 포함)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반부패 활동과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법률에 의해 구성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법행위를 기업 스스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며, 적법하고 청렴한 기업 활동이 결국은 더 큰 이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 2) 국제 환경 변화

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의 부패에 대해 국내보다 훨씬 앞서 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OECD<sup>2)</sup>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03년에는 UN<sup>3)</sup>총회에서 반부패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외 WTO<sup>4)</sup>, ICC<sup>5)</sup>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부패 방지라운드’ 추진을 통해 ‘반부패’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법률의 제정도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였으며, 통일된 윤리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각급학교, 단체 등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다. 영국이 2011년 제정한 뇌물방지법(Bribery Act)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법에는 내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충분한 예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이 준수하여야

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국제연합(United Nations)

4)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5)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BS10500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ISO26000이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sup>6)</sup>에서 영국의 BS10500을 토대로 한 국제 뇌물방지경영시스템표준인 ISO37001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는 인식과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서 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반부패'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 나.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 변화

### 1) 주주 및 투자자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 위험선호적인 주주나 투자자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이 편법·위법행위를 하거나 부패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주주와 투자자는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기업의 경영 철학, 비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투명한 재무 관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한 경영 활동을 할 것이 요구된다.

### 2) 임직원

기업을 구성하는 내부 임직원들 또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이미지가 중요해지면서 구직자들은 단순히 연간 매출액이나 연봉이 아닌 근무 환경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

---

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조직 구성원들은 공정한 채용이나 승진과 같이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법규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분히 준수하는지, 부패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등 기업의 반부패 활동 여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 3) 협력업체 등 유관기업

기업경영에 있어 협력사, 컨소시엄 참여사 등 유관기업은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단순한 형식적 계약관계를 떠나 유관기업과 일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대관계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사를 선정하는지, 청렴계약을 실천하는지,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 로비 등 부적절한 방법도 사용하는지 등은 기업 간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대한 유관기업 상호간의 기대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4) 정부 및 지역사회

정부는 기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부패 및 뇌물 방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CPI) 등 국가별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 이상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부패수준을 중요한 요소로서 반영하고 있다<sup>7)</sup>.

기업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활동은 환경, 안전 등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지역별 청렴 클러스터와 같은 반부패 거버넌스의 형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반부패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과거에 비해 더 커졌다고 하겠다.

7)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며, '계약체결 또는 특혜 목적의 뇌물제공 관행 존재 여부', '사업허가 취득, 우호적 정책 및 계획 결정 등에 관한 기업의 부패경험' 등에 관한 평가가 점수 산정에 포함됨

## 5) 고객

최근의 고객들은 단순히 값싸고 질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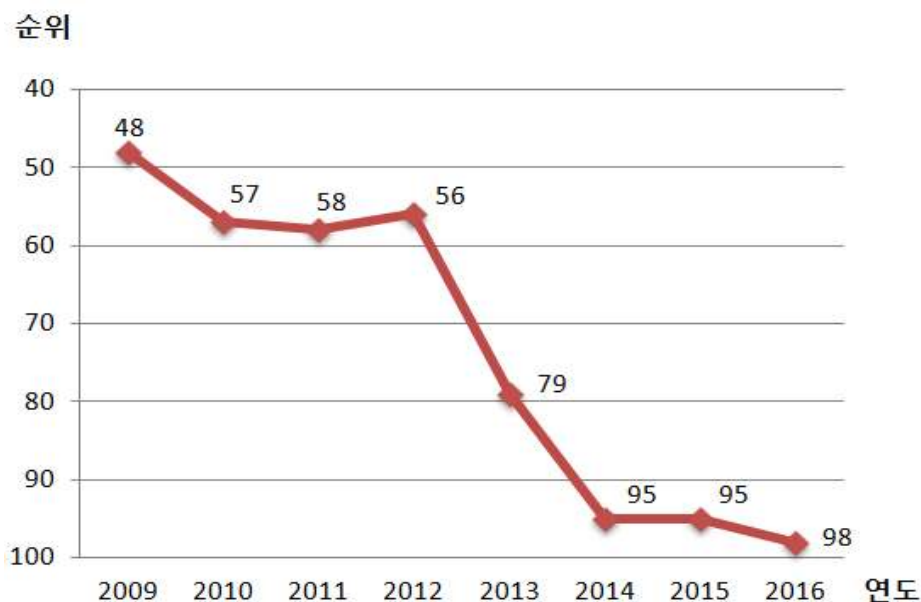
일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소비자들은 대규모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해당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모두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 다. 우리나라의 기업 반부패 활동 현황

우리나라 기업의 반부패 활동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sup>8)</sup>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부문 발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시장선도력에 비해 윤리경영 수준이 뒤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WEF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부문 결과

- ('09) 48위 → ('11) 58위 → ('13) 79위 → ('15) 95위 → ('16) 98위



8) World Economic Forum

## 2. 기대효과

### 가. 단기적 효과

반부패 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여되어 있는 청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이나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반부패 노력을 통해 법률 위반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의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 타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정 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처리비용, 제재처분(과징금, 과태료 등) 비용, 소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비용, 연루된 직원 등의 형사처벌(벌금 등) 비용 등 금전적 손해도 포함한다.

나아가,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업도 제재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장기적 효과

기업이 반부패 체계를 갖추고 실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되어 경영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과도한 접대비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나 비공식적 지출이 줄어들고, 업무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우수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용이하여 인력 재고용이나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며, 전문성 확보, 작업능률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



대도 기대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은 집중력, 창의력 등 조직 인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건강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부패’는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이다. 특히,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고객 충성도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II 추진 전략

체계적·효율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 실행 - 평가 - 환류’의 경영시스템 일반에 기초한 추진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sup>9)</sup>. 이에 따라 본 가이드에서는 반부패를 위한 전략으로서 ‘계획 수립 - 규범 마련 - 실행 - 협력 - 평가와 개선’의 5가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계획 수립’은 장·단기적으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반부패 활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규범 마련’은 구성원들이 반부패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령 및 기준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계를 말한다. ▲ ‘실행’은 마련된 규범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부패 방지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이고, ▲ ‘협력’은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자회사, 협력사, 시민단체 등과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평가와 개선’은 기업이 부패 방지를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단계이다.

9) (참고) 타 지침에서 제시된 기업 윤리경영 추진단계

- 국제투명성기구(TI) : 뇌물방지정책 채택 결정 - 계획수립 - 프로그램 개발 - 실행 - 감시 - 성과평가
- 영국 BSI : 계획 - 실천 - 점검 - 조치

### Ⅲ

##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 1. 계획 수립

#### 가. 마스터플랜 마련

##### < 주요 내용 >

-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임원을 계획 수립 총괄 책임자로 지정
- 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계획 수립
- 중장기, 단기로 나누어 추진단계별 계획 수립

기업의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해서는 정교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임원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현재의 기업 청렴 수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기업의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리더(임원)의 총괄 지휘가 필요하다. 또한, 계획은 리더의 지휘 아래 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목적과 방법, 필요 자원 및 추진 일정 등을 담고 있어야 하며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계획은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으로 나누어 수립한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과제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단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중장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를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단기 계획은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하여 1~2년 정도의 주기로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은 3~5년 주기로 수립한다(주기 변경 가능).

※ (참고) 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고려 사항 및 적용 기간

포함 내용	목적, 방법, 내용, 필요 자원, 추진 일정 등
고려 사항	산업 분야, 규모, 이해관계자, 적용 법률 및 계약조건 등
적용 기간	단기/중장기 - 단 기 : 규정 마련·정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 중장기 : 청렴계약 의무화, 클린카드제도 도입 등

## 나. 추진 조직

### < 주요 내용 >

- 반부패 활동 전단계를 총괄 관리할 전담 조직 지정·운영
- 반부패 총괄 조직의 독립성 확보
- 부패방지 관련 사항을 담당할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임원 지정 검토
- 관련 높은 부서장을 청렴리더로 지정 검토

기업이 반부패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통해 전 단계를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 운영 중인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등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기존 조직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조직 내에 반부패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 구성을 일부 변형할 수 있다.

기업의 반부패 활동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총괄 조직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성원들로부터 부패나 공익신고 관련 신고 및 상담을 처리하고, 기업의 약점을 찾아내 이를 보완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한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부패방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위

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를 정해 반부패 관련 제도의 추진현황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부패방지를 담당할 임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반부패를 경영전략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며, 실질적으로는 부패 관련 이슈가 발생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를 보다 비중있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패방지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청렴 리더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서, 대관업무 담당부서 등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부서내 청렴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 2. 규범 마련

### < 주요 내용 >

-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기준이 되는 청렴규범 마련
- 청렴규범을 전 직원에게 공유
- 임원진의 청렴규범 준수 의지 표명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청렴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청렴규범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모호한 규정은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구성원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정확하고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청렴규범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으며 조직과 구성원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이 되므로, 제·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확정된 내용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한편, '청렴규범 선포식', '청렴규범 서약식'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임원진들의 청렴규범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직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청렴규범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 3. 실행

#### 가. 부패신고제도

##### <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시스템 확보 및 신고방법 다양화
- 신고 처리 절차 마련
- 담당자와 책임자 지정,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부패신고제도 홍보

부패신고는 자율적인 신고의식에 기초한 저비용·고효율의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기업은 내·외부로부터 부패신고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부패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패신고창구를 마련할 때는 되도록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패신고의 특성상 신고자가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패신고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 처리 절차를 정해 규정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익명신고 가능 여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주체 및 방법, 신고자 보호의 범위 및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절차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여부, 신고자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신고내용 등에 관한 비밀준수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외부에 공개하도록 한다.

한편, 제도의 운영을 전담할 담당자 및 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외부 압력이나 부적절한 개입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부패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자유로운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나 후속조치에 대한 불신 등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한다.

## 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부패행위로 꼽히는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업은 정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에게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주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부패가 문제시되는 모든 국가들이 정경유착을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하여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기업의 경우 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기업은 구성원들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0)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품수수 금지

### < 주요 내용 >

- 금품수수 금지 위반 사항 사규 반영
- 금품수수 신고제도 도입
- 금품수수 방지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대관업무 관련 예산 및 집행기준 검토
- 클린카드 도입 검토

기업은 구성원들의 금품수수 금지 원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내용을 청렴규범 등의 사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은 금품수수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규에는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기업은 임직원이 유관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나 선물 등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금품수수 신고제도가 대표적인데, 제공받은 금품등을 기업 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맡기면 해당 센터에서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기부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금품등을 개인이 직접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불편함을 막아 금품등 수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직 차원의 대응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구성원들이 기울이고 있는 금품수수 방지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된 조직 문화나 상관에 의한 지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관업무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공직자 등 외부에 금품이나 향응 등이 부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추정해 지난 해 국내 기업 59만여개의 법인카드

결제 접대비 규모는 9조 9,685억원에 달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계기로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관행화된 금품·향응 제공으로 인한 법률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접대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엄격한 집행 기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클린카드'의 시행을 통해 부패발생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부적절한 접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을 사용 제한하고 심야, 휴일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 2) 부정청탁 금지

### < 주요 내용 >

- 부정청탁금지 위반 사항 사규 반영
- 청탁등록시스템 마련
- 부정청탁 처리 절차 마련
- 부정청탁 예방 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기업은 내부 구성원이 정부기관이나 타기업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부정청탁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 및 예외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 「청탁금지법」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



-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  
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  
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  
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  
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  
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반면, 외부로부터 기업 구성원이 받는 부정청탁은 그 범위를 어디까  
지로 볼 것인지 기업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 정보에 대한  
누설이나 각종 계약체결 관련 청탁이 대표적이며, 관련된 사항은 사규  
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도록 한다.

또한, 구성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신고할 수 있  
도록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직무 참  
여를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탁등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정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은 부정  
청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구성원들은 청탁받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 받은 내용을 조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자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제재(계약대상 배제, 청렴교육 실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부정  
청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부정청탁 예방 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거래 상대방이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에 대한 현황을 조  
사하거나 신고받은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결과를 검토하는 등 「청탁금  
지법」과 기업이 스스로 정한 사규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  
하여야 한다.

## 다. 공익신고제도

### < 주요 내용 >

-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및 처리절차 기준 마련
- 공익신고 창구 운영 및 공익신고책임자 지정
- 공익신고 처리 협조체계 확립
-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관리 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  
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신고  
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도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 해당한다<sup>11)</sup>. 이에 따라  
기업은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관련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기업 또한 책임을 지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직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기업은 구성원들의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조사, 신고자 보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전 과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익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접수방법, 신고사항 조사 및 협력의무, 조사결과의 통보, 개인정보의 보호, 신고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 안전·환경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조직 내부와 외부 행정기관 등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sup>13)</sup>.

한편, 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담당할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기업 내 별도 조직을 두거나 외부 위탁을 통해 창구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부패신고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등 공익신고 담당자의 전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예시)

- 화학사고 발생시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화학물질관리법)
- 소유, 운송 중 신고대상 가축 발견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가축전염병 예방법)
- 수질기준 위반한 먹는샘물에 대한 회수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먹는물관리법)

문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만큼 전담하여 처리할 인력을 지정하고 간부급 직원을 책임자로 둘 필요가 있다. 책임자를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의사결정,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공익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권익위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교육, 법령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sup>14)</sup>.

마지막으로,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 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기준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있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등을 공익신고 담당자 및 책임자가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내부감사제도

### < 주요 내용 >

- 내부감사의 절차·기준 확립 및 내부 공유
- 내부감사의 대상범위 재검토
- 감사결과 내부 공유
- 감사결과를 프로세스 개선으로 연계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업은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고, 가능하면 규정화한다. 또한 이를 내부직원에게 공유함으로써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모두 내부감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부패의 개념은 시대나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감사 또한 그 대상범위를 확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협소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감사를 통한 부패의 사전예방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패에 직접 가담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부패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나 사익 추구와는 무관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감사 대상범위를 재검토한다.

감사결과를 내부에 공유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적발내역이 없더라도 감사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유함으로써 감사과정 자체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례별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제재수준 등 공개를 통해 교육 및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감사를 통해 수범사례를 찾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내부감사를 완료한 후에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관련된 프로세스에 관한 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사건 중심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마. 상벌제도

### < 주요 내용 >

- 상벌제도 관련 인사규정 및 기준 검토 및 마련
- 확정된 규정 및 기준을 전 직원에 공유
- 부패 방지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내부 기준 위반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기업 구성원들이 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벌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인 청렴노력을 유도하고 명확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외없이 적용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상벌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내부 규정(인사규정 등) 정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행동기준, 상벌수준, 타 제도와 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직원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도록 한다. 특히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상벌제도 관련 인사규정 및 기준 검토

내용	구체적인 대상 및 상벌수준, 타 제도와 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절차	내부직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확정된 규정 및 기준은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실천력을 높이고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한다. 그리고 반부패를 성실히 실천한 구성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처벌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경고(Warning)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내용 >

- 구체적인 교육 계획 수립
- 대상별, 상황별,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
- 교육 실시 및 교육 효과 점검

## 1) 교육계획 수립

청렴을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청렴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청렴 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교육 주기와 대상, 내용과 방법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렴 교육은 반드시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직무 또는 소양)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청렴 소양교육으로만 진행하기보다는 대상별, 상황별,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경우 임원, 승진자, 신규자 등 주요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고, 외부 관계자들과 함께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이 추천된다.

보다 집중적인 청렴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나 제도, 또는 특정 업무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위반행위 제재 기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감사제도나 신고자 보호제도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업무나 대관 업무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 표준 업무절차를 만들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청렴 교육은 필요성이나 관련 이론 등 총론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닿는 사례를 통한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패 사건을 목격한 경우나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역할극 등을 통해 미리 체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협력사나 정부기관 등 외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참고) 청렴교육 프로그램 예시

<b>대상별</b>	(내부) 임원, 신규자, 승진자 등 주기별 교육 (외부) 협력사,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경영 워크숍
<b>주제별</b>	(법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률 (제도) 내부감사 관련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자 보호제도 (업무) 계약, 구매, 영업, 대관 업무
<b>상황별</b>	(내부) 부패사건 목격, 공익침해행위 발생 등 (외부)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정부, 고객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등

방법론적으로는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상황별 역할극과 같은 참여형 교육, 사이버 콘텐츠 형식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렴 연극이나 청렴 콘서트와 같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청렴’이라는 이슈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참고) 유형별 청렴 교육 프로그램 예시

분류	주요 내용
강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방지의 필요성 및 실천 방법 강의</li> <li>청렴 관련 영상 시청</li> </ul>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 게임</li> <li>상황별 역할극</li> <li>양심경험 공감 토크</li> </ul>
공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 연극/뮤지컬</li> <li>청렴 콘서트</li> </ul>

그 외에도 홈페이지, 사내방송, 사보 등 발간물, 스마트폰 앱, SNS 등을 통해 청렴규범, 관련 법규, 적용 사례, 최신 이슈 등을 게시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청렴에 관한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협력

### 가. 반부패 네트워크

국제상공회의소(ICC) 기업책임&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인 프랑소와 빈케(Francois Vincke)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부패방지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 부패 척결을 위한 두 부문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생각과 의지가 조직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특성상 내부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활동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나. 청렴 확산 노력

#### < 주요 내용 >

- 지자체, 중앙정부 등 행정부와의 협력 강화
- 자회사, 협력사 등 유관기업과의 협력 및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 1) 정부기관과의 협력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윤리경영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반부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청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도 반부패 활동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 2) 유관기업과의 협력 및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자회사나 협력사, 컨소시엄 참여사, 거래 상대방 기업 등과 같은 다른 기업과의 반부패 협력 또한 중요하다.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어느 한 기업이 반부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 간 반부패에 대한 공조를 다지고 실천을 위한 공동의 행동들이 필요하다. 계약서나 컨소시엄 협약서 등에 청렴의무를 포함하거나 윤리경영을 위한 워크숍이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

## 3)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경제단체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청렴한 활동을 감시하고 한편,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업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국제동향 등을 연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은 타 기업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객들의 변화되는 니즈(needs)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 참고 > 청렴의무조항 예시 및 참고 입법례

#### ○ 예시

제○조(청렴의무) ①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조(손해배상 책임) ① “갑”과 “을”은 제○조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참고 입법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평가와 개선

### < 주요 내용 >

- 부패 예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 각 평가별 평가 시기 및 주기 설정
- 평가결과를 차년도 및 중장기 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결과 공개 검토

수립한 계획에 따라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 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가려내고 이를 다음번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자가진단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패 예방을 위해 추진한 노력도에 대한 평가와 실제 드러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각각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기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정한다.

노력도 평가의 경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며, 계획에 기반한 실적 기준과 배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인력 및 예산 투입이 계획과 같이 이루어졌는지, 각종 시책이 계획한 시기에 맞춰 추진되었는지,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해 미리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는지, 부패·공익신고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호하였는지 점검한다. 이러한 노력도 평가를 통해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을 대내외에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과 평가의 경우 청렴수준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험요인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이 결과를 노력도 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력은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기업의 공익침해예방 및 부패예방 수준을 조사·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노력도 평가와 성과 평가의 시기와 주기를 각각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단기계획의 시기와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결과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는 인트라넷 공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조직의 반부패 노력과 그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사회책임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의 노력과 성과, 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대내외에 기업의 반부패 의지를 나타내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한다.

### < 참고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지속가능보고서 :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이나 조직이 스스로 발간하는 보고서
  - 해외 윤리경영 선도기업들은 자체 행동 규범 운영, 임직원 교육 등 현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현황은 미비한 상황
- ※ 연도별 보고서 발간현황 : ('03년) 4개 → ('09년) 66개 → ('15년) 102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